
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곽상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2.

발 의 자 : 곽상언 · 김영환 · 허성무
이정헌 · 이훈기 · 장종태
권향엽 · 김주영 · 황정아
정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국내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하여 물산업 진흥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.

이에 첨단산업과 물산업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,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실행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.

아울러,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·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는 한편,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하여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.

주요내용

- 가. 법 적용의 명확성, 기후테크 등 첨단산업과 물산업의 융합 및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물산업 정의 신설함(안 제2조제2호).
- 나. ‘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’의 실행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전망,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함(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7호의2·제7호의3).
- 다. 물기업 지원을 위한 실증 인프라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물산업 공공기관에 실증화시설 조성·운영 기능을 부여함(안 제15조제1항).
- 라. 정부의 물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과평가 근거 신설함(안 제23조의2 신설).
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물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산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분석”을 “분석 및 변화에 대한 전망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

7의3.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이행 방안

제7조제3항 중 “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”를 “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”로, “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”을 “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3호 중 “기관 간 기술협력”을 “국내외 물관리기술의 연계·협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”을 “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”으로, “구성하여”를 “단독 또는 공동으로 구성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운영”을 “구성·운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”을 “국

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입지선정”을 “입지선정, 공동 조성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성과평가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기업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,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주기, 내용, 절차,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 중 “제23조”를 “제15조제3항 및 제23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기관 간 기술협력은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물산업”이란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~ 파. (생 략)</p> <p>3. ~ 7. (생 략)</p> <p>제5조(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) ① (생 략)</p> <p>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<u>국내외 환경 분석</u></p> <p>3. ~ 7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8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물순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산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---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가. ~ 파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분석 및 변화에 대한 전망</u>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의2.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</u></p> <p><u>7의3.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이행 방안</u>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

③·④ (생략)

제7조(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
구축) ①·② (생략)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
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
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
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
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
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
다.

④ (생략)

제8조(물관리기술 개발 촉진) ①
정부는 물관리기술 개발을 촉
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
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3. 기관 간 기술협력 및 인력
· 정보 등의 교류

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5조(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
집적단지의 조성·운영 등) ①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
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
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
시설·단지를 포함하는 물산업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
구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「지
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 ---
----- 지능정보사회 종합
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
획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물관리기술 개발 촉진) ①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국내외 물관리기술의 연계
· 협력 -----

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
집적단지의 조성·운영 등) ①
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
업 공공기관은 -----

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
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바에 따라 물산업 실증화
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을 제
23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
할 수 있고, 이 경우 그에 필
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
지원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
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
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
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
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
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른 물산업 실증
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
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<신설>

----- 단독
또는 공동으로 조성하여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조성·운영 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
물산업 공공기관은 -----

⑥ -----
----- 입지선정,
공동 조성 및 운영 -----
-----.

제23조의2(성과평가 등) ① 기후
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기업 지
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

<p>제24조(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) <u>제23조</u>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/p>	<p><u>기 위하여 물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,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주기, 내용, 절차,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제24조(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) <u>제15조제3항 및 제23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
--	---